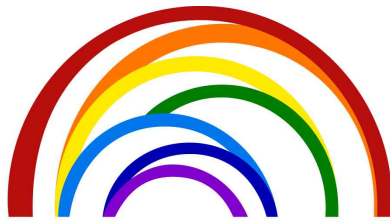


청소년육성위원회 정기회의
2015. 3. 17.(화) 10:00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

회 의 자 료



성 동 구

(노인청소년과)

2015년 상반기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정기회의

차 례

I . 개 회

II . 위촉장 수여

III . 구청장님 인사말씀

IV . 2015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계획 전달

V . 건 의 사 항

VI . 폐 회

2015년 상반기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자료

I 운영현황 및 사업비 교부

청소년육성위원회 현황

- 구 성: 28명
 - 위 원 장: 구청장
 - 위 원: 주민생활국장, 노인청소년과장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 17명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성동경찰서 청소년계장
성동청소년수련관장,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성동구지회 위원
금호청소년독서실 관장, 성동구 자율방법연합대 위원
- 임 기: 3년
- 기 능: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청소년관련사업에 대한 자문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방향 설정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사업비 교부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6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 교부시기 : 2015. 3월, 7월 교부
- 지원방법 :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통장으로 교부
- 교부금액 : *****
- 집행기준
 - 청소년보호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 재료비
 - 단체원의 청소년보호활동에 소요되는 교육, 간담회, 현장활동 급량비 등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평가

- 평가대상기간: 2015. 1월 ~ 10월말
- 평가시기: 2015. 11월 중순
- 평가방법
 - 각 동 지도협의회에서 제출한 활동실적 자료를 기초로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서면평가 후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
 - 평가 시 각 동별 자체계획 시행 여부 및 결연사업 내용 적극 반영
- 주요평가 내용
 -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적(증빙자료 필요)
 - 추진계획 등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전반적인 사항
- 평가결과 조치: 우수 동 구청장 표창 수여
- 수여방법: 추후결정

우수 청소년지도위원 표창

- 표창대상: 우수 활동 청소년지도위원 17명
- 선정방법: *****
(3년 이내 구청장 표창 수여자 제외)
- 수여방법: 추후결정

※ 신분증 등 제작 지원

- 신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신분증, 홍보물 등 지원
 -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공문으로 제출 후 일괄제작 지원

III

청소년 보호 주요제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5.3.25시행)]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방법(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표시장소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3.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학교폭력 예방

1. 학교폭력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예방 정책 방향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
- 학교,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 협력망 구축 노력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도위원 홍보, 계도, 순찰 등 활동 강화

3. 신고 방법 [붙임1 참조]

- **전 화: 국번없이 「117」 24시간 운영**
- **문 자: 수신인 #1388, #0117로 문자전송**
-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어 플: m.safe182.go.kr**

◆ 청소년인터넷 중독 해소

2012년 만15~19세 청소년 중 하루 평균 3시간 초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남자 24.1% 여자 9.3%로 2011년 기준 전체 청소년의 10.4%가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남

1.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동구청소년수련관 내)

- 전 화: [2299-1388](tel:2299-1388) (상담시간: 월~토 09시~18시)
- 홈페이지: www.sdyc.or.kr

2. 청소년전화: 국번없이 1388(휴대폰은 02-1388)(24시간 365일 무료 상담)

◆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1. 개 요

- 청소년을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약물예방 교육 및 치료활동 강화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

2. 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

3. 판매금지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판매 회수마다 100만원 과징금)